

『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2011.06.27)에 따른 재난 관리기금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정비 하여, 각종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 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3조)
 -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: 종전 30%에서 15%로 하향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(안 제6조)
 -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) 및 보수·보강
 -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
-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-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-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-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 개정
 - 기금운용관 : 자연재난업무 담당국장 → 건설도시국장
 - 기금출납원 : 자연재난업무 담당 → 방재담당

4. 관련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2011.6.27)에 따른 재난관리기금법령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 사용 용도를 정비하여 각종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,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의 30%에서 15%로 하향적립하며,
(법정적립액 : 구미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입에 대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)

-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
-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